

수원지방법원 2024. 10. 17 선고 2023가단58357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중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철

피 고 B중중

변 론 종 결 2024. 9. 26.

판 결 선 고 2024. 10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. 10. 1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으로, 주문 제1항과 같다.

예비적으로,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. 10. 11.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 임경옥

별지